

#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11.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11. 19
- 다. 상정일자 :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09.12. 2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- 제안설명자 : 임 경 선 토목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상의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제명 「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로 변경(안 제명)

- 2)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
  - (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로 변경(안 제1조)
  - (나) 「도로법」 제64조를 「도로법」 제76조로 변경(안 제4조)
- 3)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를 명문화함(안 제2조)
- 4) 현행 규칙에 규정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### 3. 검토보고 [신승관 전문위원]

-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,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상의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제출한 것으로
- 조례 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,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,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」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